

초년생 사건기자가 고민해 본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사 삭제 범위는?



글. 이대희
CBS 사회부 기자



들어가며

출입처인 경찰서 기자실에 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으니 연락을 해봐라”는 데스크의 전화를 받았다. 순간 덜컥했다. 일단 기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썼던 기사에 문제가 있어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썼던 기사들을 떠올려봤지만, 딱히 문제가 됐을 만한 기사가 생각나지는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를 건 순간 의문은 풀렸다. 다행히 기사 문제로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기고를 부탁한다는 요청이었다. 기고 내용에 대해 물어보니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사 삭제 범위’라는 주제였다. 분량도 만만치 않았고 주제도 다분히 학술적인 영역이라 초년생 기자에게는 다루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고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사를 쓰는 젊은 기자의 시각으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싶다는 담당자의 설득에 결국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최근 ‘기사를 송고한다’는 행위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됐다. 과거에는 신문기자는 지면에, 방송기자는 화면과 전파에 기사를 실어 보냈고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사 대부분이 인터넷에 송고된다. 이 기사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또 한 번 널리 퍼진다. 오래전 송고한 기사도 검색엔진을 돌려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이런 인터넷 시대에 기자 생활을 시작한 세대다. 초년생 기자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 삭제’라는 민감한 주제에 감히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나는 사건기자다

필자는 4년 차 초년생 사회부 사건기자다. 기자라는 직을 업으로 삼은 뒤 단 한 번도 사건팀을 떠나 본 적이 없다. 사건기자란 쉽게 말해 전통적인 기자직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사건들을 직접 발로 뛰어가며 취재하는 게 사건기자의 원칙이다. 사소한 팩트(fact)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이 팩트가 사실인지 취재하며 조금이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한다. 또한 사건과 사고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가까이 현장에 다가가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사건·사고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일어난다. 화재, 교통사고, 붕괴 등



의 사고도 누군가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한다. 자연재해 역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 지금까지 사건기자를 하면서 썼던 수많은 기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기자들이 쓰는 기사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와 인격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취재한 팩트를 확인해 진실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또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을 확정된 진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을 읽어보면 가끔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기도 한다.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심지어는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오보’, 직접 당해보니

그러므로 기자들의 키보드는 무겁고 진중해야 한다. 거짓이나 편향된 시각을 기사에 담은 행위는 한 개인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흉기다. 따라서 오보는 범죄일 수도 있다. 잘못된 사실이 퍼져 나가면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보는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을 때 발생한다. 서로 다른 두 주장에 대해서 양쪽을 충분히 취재하지 못하면 정확하지 못한 기사가 송고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기사에서 출처에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사람으로 묘사돼 심적 고통을 받았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기자가 되기 전, 당시 대학생이었던 필자는 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었다. 주차단속을 하는 부서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전화 욕설은 다반사에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도 많은 곳이었다.

그날도 한 40대 부부가 와서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은 이 정도 설명에 포기하지만 이들 부부는 막무가내였다.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남편은 주차를 했던 그의 아내를 타하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도 불뚱이 튀었다. 부부가 아버지뻘인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고성어 오갔고, 사건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남편이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 필자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이 남편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결국, 경찰이 왔고 상황이 종결될 줄 알았지만 일은 더 커졌다. 욕설에다 주먹을 휘두른 이들 부부는 오히려 공무원과 필자가 자신들을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난생처음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들 부부는 다음날 다시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이 기사화가 됐다. 통신사와 지역지 등 몇 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현장에 다녀간 기자가 없었는데 기사화가 됐다는 데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건 기사 내용이었다. 부부의 주장만으로 기사가 작성됐던 것이다. 포털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갔고 댓글에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줄지에 필자와 공무원들은 성추행·폭행범으로 전락했다.

실명보도는 아니었지만, 해당 지자체의 이름과 담당업무가 기사에 반영됐다.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과 필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정도의 기사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부정확한 사실관계, 한쪽의 주장을 기반으로만 작성된 기사였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기자에게 이메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기사 수정이나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던 시기였기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생각도 하지 못해 한참 동안 분한 마음을 삭힐 수 없었다.

물론 오보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오보 탓에 한 사람이 어떤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을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다. 기자가 되고 나서는 기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게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됐던 경험이었다.

특종이나 오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이외에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오보의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오보는 이른바 ‘특종 보도 경쟁’에서 종종 발생한다. 다른 언론사에서 입수하지 못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할 때, 빨리 보도를 해야 한다는 욕심



이 원인이다. 입수한 팩트에 대해 여러모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낙
 종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 오보는 발생한다.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일본 민영방송인 TV아사히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
 장 후계자 오보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TV아사히는 2009년 6월 10일
 오전부터 당시 김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각된 김정운의 사진을 단독
 으로 입수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됐다. TV아사히는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결국 사과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당국자와 북한 관
 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었지른 물을 담을 수는 없었다.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최악의 오보는 아예 없는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경우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 1981년 미국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어머니의 정부(情
 夫)에 의해 헤로인에 중독된 8살 소녀의 일상을 심층 취재한 ‘지미의 세계
 (JIMMY’S WORLD)’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이 기사에 사회는
 분노했고 기사를 쓴 재닛 쿡 기자는 권위 있는 언론사인 폴리처상까지 받
 았다.

하지만 결국 이 보도는 날조로 드러났다. 재닛 쿡 기자는 폴리처상을 반납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사과보도를 해야만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보도로 쌓았던 명성에 스스로 흠집을 낸 셈이 됐다.

다행히 아직 필자에게는 이런 중대한 오보를 날린 경험은 없다. 기자가 되
 기 전 경험과 수많은 오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사실 보도도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쓴 오보로 피해가 가는 일도 있지만, ‘사실 보
 도’를 했는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팩트를 여러모로 확인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기사도 누군가에게 피
 해가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취재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는 게 기자들의 의무다.

사건기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건기사가 그렇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사건기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사화하고 있다. 이런 때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인용하는 형태
 로 아래처럼 보도된다.



사례 1

서울과 부산에서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XX경찰서는 배달원으로 일하며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김 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XX구 XX동의 한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현금 4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음식점 22곳에서 1,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 24곳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에서 피의자의 혐의는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일 뿐 확정적인 게 아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무죄로 확정되는 일도 있다. 이러면 실제 죄 없는 당사자들에게 기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른바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이 그런 경우다.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하루 만에 한 노숙인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 노숙인은 숨진 소녀를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인 고등학교로 데려가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회유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노숙인의 재심 청구에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5년을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뒤 나온 판결이었다. 결국,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노숙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여기에 잘못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이 노숙인은 두 번 고통 받았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기사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 기사나 자살 기사가 그렇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떠오르게도 한다. 기사가 빌미가 돼 ‘신상 정보’라도 털리면 2차 피해까지 보는 일도 있다.

지난해 경찰 브리핑을 통해 썼던 기사가 그랬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한 여대생이 여관으로 옮겨져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치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 기자들도 취재를 통해 기사를 송고했고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처리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

사례 2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OO경찰서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박 모(33)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임 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40분쯤 XX구 XX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27·여)씨를 임 씨 소유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납치당한 곳은 자택에서 불과 150m가량 떨어져 있던 곳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뒤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사 당시에는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익명보도였지만 보도 내용을 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 관한 기사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같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 여성은 2차 피해까지 받게 된 경우다.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첨예한 진실공방에서 엇갈리는 주장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공방 끝에 결론이 내려지거나 합의로 종결되는 건이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최근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던 텔런트 박시후 사건이 이런 경우이다. 양측에서 진실공방을 하며 당일 오고 갔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공개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 보도를 취합하는 '박시후닷컴'까지 나타날 정도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시후 씨는 텔런트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고소한 여성도 이름까지 공개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엉뚱하게도 사건과 관련 없는 한 여성이 피해자로 몰리면서 한바탕 소동까지 빚었다.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통해 두 사람과 함께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최근 1개월(2.28.~3.27.)간 박시후 씨
관련 기사는 3,044건에 달한다.



기사로 입은 피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례 이외에도 언론을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1차적으로 언론사 자체의 판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민감한 주제의 기사일 경우 자체 데스크 기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대부분 언론사의 특성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간 뒤에도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는 대부분 일단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요즘에는 기사 밑에 달린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한다. 문제 제기가 정당하면 언론사 차원에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된다. 언론사마다 이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 필자도 가끔 그런 메일을 받는 때가 있다. 그럴 경우 데스크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경험이 있다.

물론 모든 문제 제기를 언론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제기자와 언론사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제도를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경찰이나 검찰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다. 이런 기관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언론사는 기사 정정이나 삭제, 반론보도는 물론 금전적으로 배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와 언론사 사이에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인터넷 시대, 달라진 언론계 풍경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런 구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들어 초고속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2010년 이후에는 휴대가 쉽고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SNS도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저널리즘의 풍경도 180도 변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기사는 유통기한이 있었다. 과거 언론보도는 신문 같은 활자 매체나 라디오·TV 같은 전파 매체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기사는 신문이 폐휴지가 되거나 전파가 한 번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면서 생명이 다했다. 굳이 도서관에 가서 과거 신문을 들춰봐야만 기사를 다시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 시대에서 기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사실상 ‘영생’을 얻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터넷의 주 특성은 저장, 복제, 검색이다. 이를 통해 기사가 가졌던 시공간의 한계는 무너졌다. 이제 인터넷 매체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활자매체나 전파매체까지 모든 기사를 인터넷으로 송고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다. 필자가 기사를 쓰면 CBS 라디오, 노컷뉴스 홈페이지, 무가지 노컷신문을 통해 보도된다. 동시에 같은 내용이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사이트 14곳에 동시에 송고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기사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필자도 필자가 쓴 기사가 어디까지 퍼져 나갔는지 통제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렇게 널리 퍼진 기사는 사라지지도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과거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기자가 된 뒤 처음으로 송고한 기사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볼 수도 있다.

인터넷 시대 이전 기사도 ‘부활’했다. 그동안 종이나 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형태로만 존재했던 과거 기사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독립신문> 같은 폐간된 신문을 디지털화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별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강력한 건 검색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지면을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다. 신문지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키워드 검색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1920년대 동아일보의 기사도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화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독립신문

디지털시대, 잘못된 기사는 어디까지 삭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기사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확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검색까지 쉬워지니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문제가 된 기사를 어디까지 삭제·수정해야 하는지가 질문으로 떠올랐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연 잘못된 기사 모두를 고칠 수가 있는냐의 문제인 셈이다. 기사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앞서 언급했던 구제 방법들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미처 삭제하지 못한 기사 때문에 피해가 계속 남는다는 것이다. 보통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전송된 기사를 고치게 된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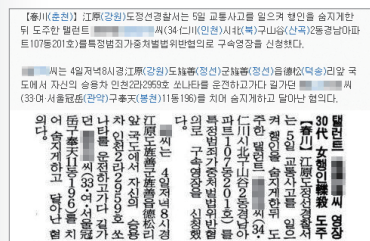
하지만 SNS가 발달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 SNS의 특성상 이슈가 되는 기사는 사실상 무한대로 퍼져 나가게 된다. 이 기사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고칠 만큼 고쳤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어딘가에 고쳐지지 않은 기사가 숨겨져 있다가 검색될 수 있다. 기사의 유효기간이 사라진데다 무한 확장성이 이 같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한 한 번 피해를 받았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았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오래된 기사’의 문제도 발생한다. 기사가 인터넷에 송고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유통기한이 사라져 시간이 지난 뒤 검색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을 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헌법 13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기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때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았음에도 2차로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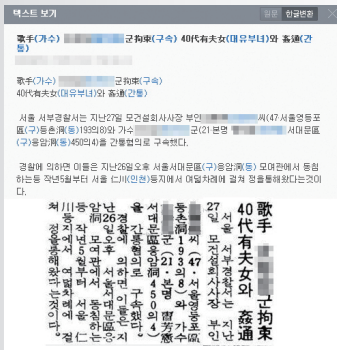
방송인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가 1990년대 저질렀던 교통사고 관련 기사는 여전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이 되고 있다. 검색된 기사에는 실명이 적혀 있다.

사진 1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된 A씨 기사



사례 3, 4의 경우 실제 기사에서는
실명이 보도되었으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음.

사진 2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된
B씨 기사



사례 3

탤런트 A씨 영장, 30대 여 행인 역살 도주 (1991년)

강원도 정선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탤런트 A씨(34 · 인천시 북구 산곡 2동 경남아파트 107동 201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저녁 8시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앞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
차 인천2라2959호 쏘나타를 운전하고 가다 길가던 D씨(33 · 여 · 서울 관악구 봉
천1동 19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면서 당시 한 번 처벌을 받았을 A씨가 2차
처벌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널리 유포됐던 '가수 B씨, 이명박 나비효과' 글도 대표적인 사
례다. 해당 글에는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한 가수 B씨의 간통 구속 기
사의 캡처 이미지를 통해 시작한다. 기사는 이렇다.

사례 4

가수 B군 간통 혐의로 구속 40대 유부녀와 간통 (1975년)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모 건설회사 사장 부인 C씨(47 ·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93의 8)와 가수 B군(21 · 서대문구 응암동 450의4)을 간통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모 여관에
서 동침하는 등 작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정을 통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B씨와의 간통 탓에 해당 건설회사의 사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자리를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꿰차고, 이후 탄탄
대로를 달려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나비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B씨는 소 취하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과거 받았
던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받았다.

과거 기사에 적시된 개인정보가 뒤늦게 드러나 피해를 보는 유형도 있다.
[사례 3], [사례 4]에서도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이기도 하다. 기사 형식은 시
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는 개인정보 노출

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범죄 보도와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모두 노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행은 1990년대 말 신원을 노출하는 보도가 공공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잇따르면서 보도 기준이 만들어진 뒤 사라졌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 기사가 지금 공개되면 문제가 커진다.

사례 5 (기사 내 실명은 가명 처리)

재산분배 불만 어머니 살해(1989년)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재산분배문제를 놓고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폭행, 중태에 빠뜨린 김수명 씨(33 · 운전사 · 관악구 남현동 538)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쯤 부모가 평소 자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귀가, 분가를 해야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어머니 박점숙 씨(74)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말리던 아버지 고산 씨(77)를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났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살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기사들 가운데 무작위로 고른 기사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기사가 보도된 1989년에는 익명 보도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위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2013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기사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포털사이트의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정립 시급

이렇게 매체 환경이 크게 변한 탓에 현재 존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이런 구제 방법들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1차적으로 언론사 자체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언론사도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06년 지면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내부 방안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최종심에서 무혐의 · 무죄 판결 ▲오보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 등에 관해서는 기



사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다만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면 오래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등 인터넷에 실리는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 제정했다. 과거 기사에 노

출됐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기사를 지워달라고 할 때 이를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 모 씨의 요청이 계기가 됐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김 씨는 기존 기사에 있는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지난해 말 요청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 당시 동의를 얻어 촬영했던 김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거나 영상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인터넷에 실린 기사를 수정·삭제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대응 요령도 결정했다. 오보는 즉시 삭제, 정정하고 요청한 이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오류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내부 협의를 통해 최장 30일간 온라인에서 임시차단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출판물의 정정은 최소화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의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매체 변화에 맞춰 조정과 중재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는 2005년 하반기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에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도 언론중재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매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때가 됐다. 일단 범위 문제가 있다. 조정과 중재 대상의 범위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범위 확대는 충분한 논의 끝에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무작정 대상을 넓힐 수는 없다.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모든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이 조정과 중재 대상이 된다면, 부당한 권력이 정보통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정과 삭제에 관한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 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오보도 역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언론의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보는 결국 언론을 통해 오보임이 밝혀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최초의 오보 기사만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래의 역사학자는 이 ‘미싱 링크’를 추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시대에 기사를 삭제할 때, 삭제된 인터넷 페이지에 삭제 사유와 함께 원 기사의 간략한 내용을 남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정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도 사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기준을 정할 때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 널리 유포된 잘못된 정보를 모두 추려 수정·삭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 논의가 그 출발점

최근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다. 쉽게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월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는 말은 어느새 꽤 익숙한 단어가 됐다. 하지만 이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현재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잊혀질 권리의 범주는 크게 5가지로 ▲디지털 유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사삭제 요구권 ▲게시글 삭제 요구권 ▲공공기록물 삭제 요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범주 안에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보호 영역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이 기사 삭제 요구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법제 정비포럼이 운영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